

2022 한국금융학회-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정책심포지엄

동의명령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2022. 2. 9.

이상제



KOREA
INSTITUTE
OF FINANCE

한국금융연구원

목차

I.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Regulatory Redress)

II. 동의명령 제도

III. 맺음말

I.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Regulatory Redress)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관련 위규/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 및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 구제 강화
- 포괄적인 업무개선명령,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실회복 내지 피해구제 수단 필요

IV. 영업 규제	19
1. 내부통제기준	19
2. 6대 판매규제	21
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자문업자의 영업규제	40
VI.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 구제	51
1. 분쟁조정	51
2. 손해배상	57
3. 청약철회	59
4. 위법계약 해지	63
VII. 감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65
1. 판매제한명령	65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임직원 제재	67
3. 과징금	71
4. 과태료	73
5. 형사처벌	7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 자료

2021. 3월

법 시행 후 평가 및 보완 논의

- 이익상충 업무 겸영 금지
- 고위험상품 설명의무
- 판매 관리책임
- 손해액 추정, 입증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분쟁조정 실효성
- 집단분쟁, 집단소송, 증거개시
- 금융소비자정책
- 금융교육
- 금융보안
- 재난 시 금융위 명령권
- 타법과의 관계

2113327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의원	2021-11-16
2112784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1-10-05
2109136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1-03-25
2108531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의원	2021-03-04
2107852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	2021-02-02
2106739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의원 등 10인)	의원	2020-12-18
2105139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	2020-11-10
2103512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	2020-09-03
2102904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020-08-12
2102816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홍의원 등 17인)	의원	2020-08-07
2102551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3인)	의원	2020-07-31
2101829	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0-07-13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전체 금융소비자보호법 본문포함

주제분류 Best논문 저널발행기관 회원혜택 논문작성TIP 아카루트

필터

결과 내 재검색

THOMSON REUTERS
LAWnB | 로앤비

판례 법규 결정·해석 문헌

Home > 문헌 : 논문평석

검색결과 정리

학회논문 28
 법학 20
 사회과학 8

직접선택

2020 ~ 2022

적용 적용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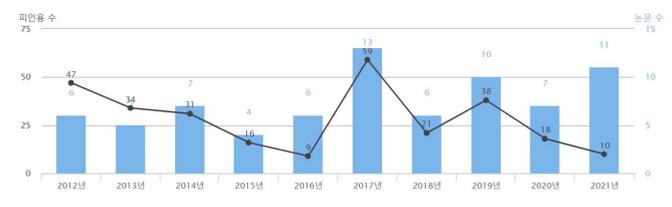
우측의 검색결과 범위 내에서 검색결과를 줄여볼

검색결과 총 292건
전체=금융소비자보호법

검색어 "금융소비자보호법" / 발행연도 "2020 ~ 2022" 에 대한 검색결과 28 건 2/2

KCI 통합검색

총 75건 전체년도 보기



연도	논문 수	피인용 수
2012년	28	47
2013년	20	36
2014년	31	7
2015년	16	4
2016년	9	6
2017년	13	39
2018년	6	21
2019년	10	38
2020년	7	18
2021년	11	10

저널명 (최근1년 상세)

- 보험법연구 (4)
- 금융법연구 (3)
- 홍익법학 (2)
- 일감법학 (2)
- 경제법연구 (2)
- 법학연구 (2)
- 소비자문제연구 (1)
- 비교사법 (1)
- 소비자법연구 (1)
- 서강법률논총 (1)
- 금융소비자연구 (1)
- 명지법학 (1)
- 은행법연구 (1)
- 경희법학 (1)
- 상사법연구 (1)
- Financial Planning Review (1)
- 주거환경 (1)
- 법과기업연구 (1)
- 동북아법연구 (1)
- 중국법연구 (1)
- 형사법연구 (1)

자료유형

- 학술저널 (292)
- 연구보고서 (28)

Q&A 및 공식 답변

금소법 FAQ



~

은행권 Q&A v8

전체 4건 [1/1페이지]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3차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2021-04-26		5282
3	금융소비자보호법 10문10답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2021-03-31		5007
2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2차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2021-03-18		5292
1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1차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2021-02-18		9746

<https://www.fss.or.kr/fss/bbs/B0000112/list.do?menuNo=200140>

무답변을 정리한 자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인 경우 별도 표기
 링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어 정의, 진
 업규제, 영업행위규제, 금융소비
 자보호, 감독 및 처분 등 관련한
 은행권 291개 Q&A, 375쪽(비공
 개)

구분	회신일자
1. 정기	1
1. 1. 1	1.20
2. 1. 2	4.9
3. 1. 3	4.22
4. 1. 4	4.22
5. 1. 5	4.8
6. 1. 6	4.27
7. 1. 7	3.26
8. 1. 8	5.14
9. 1. 9	4.22
10. 1. 10	4.8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Regulatory redress)

- ‘금융 당국 주도형 피해구제’는 금융 규제감독 당국이 개입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구제하는 개념을 통칭
- 구체적인 모습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부드러운(soft)’ 형태에서부터 법에 따라 승인, 강제 또는 명령하는 ‘엄격한’(hard) 형태까지 다양

(C.Hodges(2015), “Mass Collective Redress: Consumer ADR and Regulatory Techniques,”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pp.829–874)



MISSION

TOPICS

RECENT

MEMBERS

GLOSSARY

Regulatory Redress

This technique refers to the concept of an intervention through a public authority. This could relate to competition or regulatory issues but also cover the question of redress. Activities can range from pure influencing behaviour to approval or strict enforcement/coercion. Another possibility could be to bring collective redress to court. There are also mixed types possible. In this case, boundaries between Ombuds entities and public authorities are blurred. Examples exist in the Nordic States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Here the Consumer Ombudsman is the principle national enforcement officer.

자료: <https://europeanjusticeforum.org/glossary/regulatory-red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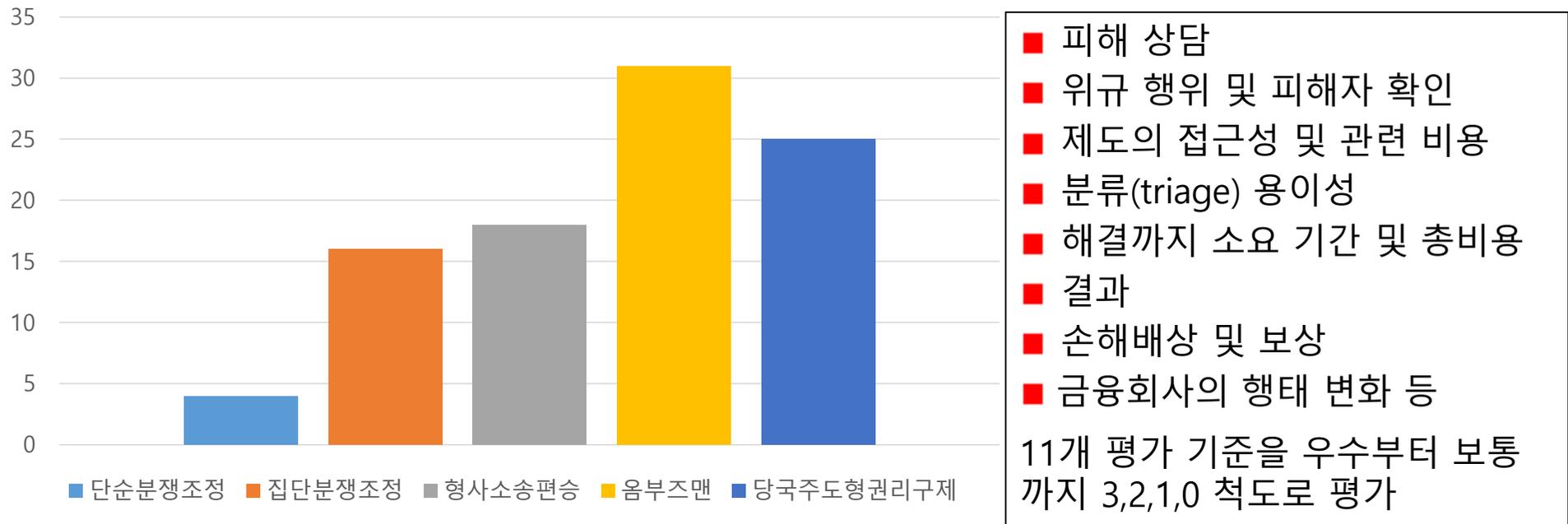
위반 제재, 침해 행위 개선 및 권익 구제 형태

- **1)규제감독 당국이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조정이나 화해처럼 금융회사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설득하고 권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피해를 이미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검사 개시 여부, 제재 조치나 과태료/과징금 부과 시 양정 기준에 이를 감안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넛지(nudge) 수단으로 작용
- **2)검사 후 개시된 제재 절차를 일시 중단하여,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time frame)을 부여하고, 보상이 적절하고 합법적일 경우 이를 제재 결정에 반영**
- **3)규제당국이 금융회사가 실행을 약속한(commit) 피해구제 방안과 업무 개선 계획 등을 승인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예방**
- **4)법원에 손해회복명령 restitution order)을 신청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자체 권한으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방안의 작성을 명령**
신속하고 급박한 피해구제의 필요성, 피해 소비자 수, 위규 행위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피해구제 명령 여부를 판단. 명령의 내용에는 특정 위규 행위가 있었는지, 위규 행위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또는 끼칠지, 피해구제 필요 및 실시 여부를 금융회사가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포함
- **5)당국이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금융회사에 협상 참여나, 자발적인 피해구제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당국이 소비자를 대표하여 법원에 피해구제 명령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금전적·비금전적 민사 및 형사 제재 등**
- **금융당국 주도형 방식이 법규 위반 제재, 침해 행위 개선 및 소비자 구제 방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package) 조치의 일부로서 규제감독 당국과 금융회사 간에 신속한 소비자 구제에 합의하는 전형적인 절차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C.Hodges and S.Voet(2018), Delivering Collective Redress: New Technologies, p.153.)

금융소비자 권익 구제 수단의 비교

- 단순 분쟁조정, 집단 분쟁조정, 형사소송(parties civil or piggy-back), 소비자 옴부즈맨(Ombudsman) 및 금융당국 주도형 권리구제 등 금융소비자 피해의 주요 다섯 가지 사후구제 수단 중에서 옴부즈맨 방식과 규제당국 주도 피해구제 방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C.Hodges and S.Voet(2018), p.298)



감독 및 제재 형태 현황

■ 조치요구(경영유의, 지적, 현지조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 확약서, 양해각서

■ 자발적 소비자피해구제 등 사후 수습, 준법 교육 이수 등은 제재 수준 양정 시 감안

-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2020. 5. 13.>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21-9,20210325\)/제23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21-9,20210325)/제23조))

- 제23조의2((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제재이전 퇴직자 포함)의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의 주의를 포함, 다만 감독자에 대한 주의를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법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치 면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21-9,20210325\)/제23조의2](https://www.law.go.kr/행정규칙/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21-9,20210325)/제23조의2))

■ 판매제한·금지 명령 도입; 피해구제 명령은 금융위설치법에 선언적으로만 반영

-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8.>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https://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20210420,18113,20210420\)/제17조](https://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20210420,18113,20210420)/제17조))

■ 제재 절차 시한부 중지나 동의명령 등 미도입

제14조(검사결과에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분석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영위하는 정황을 함으로써 신용평가를 혼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써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경우 또는 업무에 대한 경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개정 2004. 3. 5.>

나. 자율회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04. 3. 5., 2014. 11. 4., 2015. 9. 14.>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잠재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개정 2005. 8. 31.>

라. 면상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당해 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쳐 면상책임이 있는 경우 <개정 2005. 8. 31.>

마. 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5. 8. 31.>

3. 현지조치사항

확약서 및 양해각서

- 정영철(2017)은 확약서 및 양해각서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모든 위법 행위 시 제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 또는 감경함으로써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것을 주장

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 2021. 3.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 2021. 3. 25., 타법개정]

제2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주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개정 2016. 3. 22.> <신설 2016. 3. 22.>

1.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 위법·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확약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경고 이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개정 2016. 3. 22.> <신설 2016. 3. 22.>

1.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 위법·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본조신설 2004. 3. 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1. 6. 30.] [금융감독원세칙, 2021. 6. 30., 타법개정]

제5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운용) ①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확약서로, 중대한 사항은 양해각서로 조치한다.

② 확약서는 금융기관의 담당 임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제출 받고 양해각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 <개정 2005. 10. 28.>

③ 감독원장은 확약서·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재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2. 27.]

제50조의3(사후관리)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 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한다. 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2. 27.]

II. 동의명령 제도

동의명령 제도

- 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당국의 조사, 검사, 또는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발적으로 대상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극적 행위 등을 포함한 시정 계획을 당국에 제시하고, 당국이 이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합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정 기간 내 그 이행을 전제로 위법 여부는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

동의의결제도 도입 국내 법률

법률명	도입 년도	비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11376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10876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1087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113761)		2021.12.9. 국회 본회의 의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1087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1087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108760)		2022. 1. 현재 국회 계류 중

제도의 성격 및 효과

-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정당국이 내리는 법집행으로서의 명령적 행정행위이지만, 처분 내용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정한다는 점에서 화해(settlement)와 유사하고, 합의내용이 다른 소송에서 위법행위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함
- 주요국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의 제도 운영:
 - 미국 행정기관의 동의명령 (consent order) 과 법원의 동의판결 (consent decree), EU의 서약이행결정 (commitment decision), 독일의 의무부담부확약 (Verpflichtungszusagen), 프랑스의 약속이행 (engagement), 호주의 이행확약 (enforceable undertaking), 캐나다 동의협정 (consent agreement), 일본의 同意審決 (2013 폐지), 중국의 中止调查 등
- 감독 당국: 적시성·효율성·포괄성
 - 확실한 증거 확보나 불복 과정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위법성이 중대한 사건에 집중
 - 시장질서회복, 소비자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수단이나 구제수단을 적시에 포괄적으로 조치
- 사업자: 법적 불안정성·평판훼손 예방
 - 행위의 위법 여부 판정 없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이의신청이나 불복소송 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및 평판위험을 줄이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
- 소비자: 신속성·경제성
 - 사업자의 자율적인 피해구제 시행으로 다른 권익구제 수단 대비 신속하게 낮은 비용으로 직접적인 피해 구제

[참고] 주요국의 동의명령 제도

❖ 주요국가의 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 비교*

국가	명칭	대상행위	의견수렴 절차
미국	동의명령(FTC) Consent order	모든 행위	잠정안 공표 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30일, 실무상 60일)
	동의판결(DOJ) Consent decree		잠정안 공표 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60일)
EU	화해결정 Commitment decision	중대·명백한 위법행위 제외(경성카르텔 등)	잠정안 공표 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30일)
독일	의무부담부 협약	모든 행위	없음
일본	동의심결	독점적 배제조치	없음 (실무상 운영)
호주	협약	모든 행위	없음 (실무상 운영)
프랑스	약속이행 결정	카르텔 제외	잠정안 공표 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30일)
우리나라	동의의결	중대·명백한 위법행위 및 카르텔 제외	검찰총장과의 협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30일)

* 송혜진·박해주 (2020)

금융부문 동의명령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

법제도의 정당성 및 실효성 확보와 절차상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 고려 필요

- 적용 범위
- 신청 절차(신청주체, 개시 시점)
- 신청서 기재 사항
- 심의 기준
- 의견수렴(소비자등 이해관계자, 제3자, 자문위원회)
- 조기 종결·재심의·취소 및 불복(이의신청, 소제기)
- 이행관리(모니터링 및 이행강제)
 - 예컨대 공정거래법(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에서는 동의의결 대상 행위, 신청서 기재 사항, 심의 기준, 의결 절차, 취소 사유, 이행강제금, 이행관리 업무 위탁 등을 규정(§ 89-92)
 -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6호)에서 세부 사항들을 규정

적용 범위

- (1안) 동의를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감독 당국의 관할 범위 내의 모든 행위
- (2안) 신청 가능 사건을 일정 사건으로 한정(예: 형사 고발 사건(검사제재규정시행세칙 § 32⑤제1호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p>
<p>제89조(동의를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p> <p>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를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p>적용 대상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벌금(fine)을 부과할 중 대한 법 위반 행위에는 적절히 않다고 규정</p> <p>(13) Where,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which might lead to an agreement or practice being prohibited, undertakings offer the Commission commitments such as to meet its concerns, the Commission should be able to adopt decisions which make those commitments binding on the undertakings concerned. Commitment decisions are not appropriate in cases where the Commission intends to impose a fine.</p>

신청 시점

- (1안) 제재 결정 이전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
- (2안)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판매제한·금지명령 전 고지, 검사 예정 통지, 검사 후 결과 통보, 제재 절차 개시 등 각 단계 중 가능한 이른 시기로 정하고,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신청을 불허

공정거래법	유럽
심사 전 과정 및 심사보고서 통지 후에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시점 제한 없음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 통보 전: 프랑스 -심사보고서 통보 이후: 벨기에, 룩셈부르크, 폴란드(de facto) -시점 제한 없지만 가능한 심사보고서 통보 전 선호: 그리스, 폴란드 -검사 개시 통지 후 3개월 이내: 이탈리아

자료: Wagner-von Papp(2019), Commitment decisions: An overview of EU and national case law, e-Competitions, 2019.5.30.

신청서 및 의결안 작성자 및 기재 사항

- 신청 시(사업자)-개시여부 보고 시(심사관)-잠정 동의의결안 상정(심사관)-최종동의의결안 상정(심사관)-동의의결서 확정 시(각 회의) 등 작성 간소화
- 민사금전벌 부과 또는 공익기금 기부(과징금 면죄부 오명 해소 vs 신청유인 감소)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전부개정]</p>	<p>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6호, 2021. 12. 30., 일부개정.]</p>
<p>제89조(동의의결) ① 생략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이하 생략</p>	<p>제4조(동의의결의 신청 등)③ 신청인은 동의의결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신청서와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된 기간 내에 생략된 신청서의 요건을 보완하여야 한다. 1. 시정방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3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실행가능하다는 소명자료. 다만, 제3자의 조력이 시정방안의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조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정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소명자료 3.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해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 4. 기타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이행계획은 최소한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시정방안의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p>

개시 여부, 잠정안, 최종안, 의결서 기재 사항 비교

개시보고	잠정 동의의결안(최종=잠정+의견수렴+판단)	동의의결서
<p>제5조(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①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회의는 보고 후 14일 이내(제2항에 의한 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심사보고서 상정 전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행위의 내용(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행위사실을 말한다) 3.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조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사관의 검토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29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공정거래법 제89조제3항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그 예상 과징금과 시정방안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평가액 	<p>제8조(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보고) ① 제5조에 의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기간의 연장 사실 및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건의 개요 (해당 행위의 내용,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 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관련 시장구조 및 실태 4.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조항 5. 시정방안의 내용(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내역을 포함한다.) 6.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7.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동의의결 신청서 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 및 시정방안의 이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 다.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볼 경우 예상되는 제재수준에 관한 의견 라. 신청인이 해당 행위의 시정 및 그 시정방안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청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 마. 기타 적정규모의 이행강제금,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수탁기관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③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당초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보고할 수 있다. 	<p>제13조(동의의결서의 작성) ① 각 회의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동의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결일자 및 의결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주문(시정방안의 이행을 명한다는 취지 및 시정방안의 내용,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와 이행강제금 액수 및 부과 방법,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결과 보고,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 등) 5.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6. 해당 행위의 내용 7.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조항 8. 동의의결 요건에 대한 판단 <p>③ 동의의결서 말미에는 부동문자로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p>

[참고] 미국 CFPB 동의명령서 구성

CFPB Consent Order

Respondent Stipulation

■ 개관, 관련법, 사업자약정 (stipulation), 용어정의, 사실 관계

■ 동의명령 (Order): 시정 계획, 이행기구, 보고

■ 민사금전벌, 피해보상

■ 이행관리

■ 행정조항

TEMPLATE FOR CONSENT ORDER AND STIPULATION	
TABLE OF CONTENTS	
I.	Overview.....
II.	Jurisdiction.....
III.	Stipulation.....
IV.	Definitions.....
V.	Bureau Findings and Conclusions.....
VI.	Conduct Provisions.....
VII.	Compliance Plan [Option 1].....
VIII.	Compliance Committee and Compliance Plan [Option 2].....
IX.	Independent Consultant's Report and Compliance Plan [Option 3].....
X.	Customer Information.....
XI.	Role of the Board.....
<u>[MONETARY PROVISIONS]</u>	
XII.	Order to Pay Redress [Option 1].....
XIII.	Order to Pay Redress [Option 2].....
XIV.	Order to Pay Redress [Option 3].....
XV.	Effect of Misrepresentation Condition [Option 3, Part B].....
XVI.	Order to Pay Civil Money Penalty.....
XVII.	Additional Monetary Provisions.....
<u>[COMPLIANCE PROVISIONS]</u>	
XVIII.	Reporting Requirements.....
XIX.	Order Distribution and Acknowledgment.....
XX.	Recordkeeping.....
XXI.	Notices.....
XXII.	Cooperation with the Bureau.....
XXIII.	Compliance Monitoring.....
XXIV.	Modifications to Non-Material Provisions.....
<u>[ADMINISTRATIVE PROVISIONS]</u>	
XXV.	Administrative Provi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DMINISTRATIVE PROCEEDING
File No. Year-BCFP-

In the Matter of: CONSENT ORDER

[FULL LEGAL NAME OF RESPONDENT]

The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has reviewed [relevant activities] of [Full legal name of Respondent] (Respondent, as defined below) and has identified the following law violations: [describe violations]. Under Sections 1053 and 1055 of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 of 2010

Case 2:21-cv-02664-SHM-4

UNITED STATES OF AMERIC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Plaintiffs,
v.
TRUSTMARK NATIONAL BANK,
Defendant.

Civil Action No.: 2:21-cv-2664

CONSENT ORDER

I. INTRODUCTION

The Parties jointly submit this Consent Order for approval and entry by the Court. The Order resolves all clai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and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Bureau") (collectively "Plaintiffs") simultaneously filed in a Complaint, alleging that Trustmark National Bank ("Trustmark" or "the Bank") engaged in a pattern or practice of unlawful redlining in violation of the Fair Housing Act ("FHA"), 42 U.S.C. §§ 3601-3619, 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 15 U.S.C. §§ 1691-1691f, Regulation B, 12 C.F.R. § 1002.1 et seq., and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 ("CFPA").

UNITED STATES OF AMERICA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File No. Year-BCFP-

In the matter of:

[RESPONDENT NAME]

STIPULATION AND CONSENT TO THE ISSUANCE OF A CONSENT ORDER

The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intends to initiate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against [Full legal name of Respondent] (Respondent), under 12 U.S.C. §§ 5563 and 5565, for its [relevant activities] in violation of [relevant law (e.g., "the CFPA's prohibition on unfair, deceptive, or abusive acts

[참고] 판매제한·금지 명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금지를 명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 수수료 및 보수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4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참고] 판매제한·금지 명령 절차

-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명령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
- (명령 전 고지)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 의견제출 방법 사전 고지
- (의견제출 기회 부여) 명령 발동 전 기업이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
 - * 명령 발동의 시급성, 명령 발동에 따른 대상 기업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 (명령내용 공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는 명령 발동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 * ① 해당 금융상품 및 그 금융상품의 과거 판매기간
 - ② 관련 금융상품의 명칭
 - ③ 판매제한명령권의 내용·유효기간 및 사유(법령 위반 관련성)
 - ④ 판매제한명령권 발동시점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 ⑤ 판매제한명령 이후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
 - ⑥ 기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공시로 인한 불이익 등

의견 수렴

- 공개방법 및 정보 범위, 시점, 신청자 외 타부처·소비자 등 제3자 의견수렴 필요성, 의견제출 기간
- 자료열람권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p style="text-align: center;">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규칙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6호,</p>
<p>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⑤ 이하 생략</p>	<p>제9조(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p> <p>② 전항에 의한 의견수렴 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때 의견제출 기한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기산한다.</p> <p>③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시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제4호의 정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사관에게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제4호 단서의 사업상 또는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가 곤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심의기준 및 심의 권한

- '위법 확정 시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법 § 89③1) 조건의 필요 여부
- 심의기준(법 § 89③2)의 구체화·명확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사안별 결정 권한의 위임 체계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p>	<p>규칙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6호, 2021. 12. 30., 일부개정.]</p>
<p>제89조(동의의결) ①-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p> <p>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p> <p>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5조(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② 동의의결 개시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회의는 해당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회의는 법률·경제·정보통신 분야·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각 회의의 심의는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각 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참고] 공정위 동의를결 개시신청 기각 및 사유

조사개시	신청일	사건명	기각사유	의결일
2018.7	2021.5.12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건	신청대상사건 행위 법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 해당	2021.6.24
	2019.3.16	(주)엘티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를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폐업에 따라 시정조치 등의 이행확보 사실 상 불가	2019.9.2
2017.5	2018.8.13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신청인과 이해관계자 사이 해결 방안 간극이 너무 커 신청대상행위 해결 불가 판단	2018.9.18
2017.3	2018.4.24	LS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해소비자 특정 및 구체적인 피해규모 확인 어렵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8.7.2
2013.11	2017.5.24	(주)현대모비스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개시신청안 내용 미흡	2017.11.27
2014.8	2016.11.18	퀄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익에의 부합성(신속조치의 필요성, 사건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에 비취 동의를결 처리 바람직하지 않음	2016.12.15
2014.4	2014.11.21	(주)CJCGV, (주)CJENM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익에의 부합성(증거의 명백성 여부, 사건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2014.12.2
		롯데쇼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자료: 최난설현(2021), 최근 동의를결 동향과 향후 과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p.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동 학술행사, 2021.12.10..

불복·변경·취소

- 불복 소 제기: 신청자(CFPB estoppel 조건), 이해관계자(유럽조약 제230조)
- 변경, 취소 등 절차 재개 신청: '현저한 변경' 구체성, 사업자/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해관계자 등의 신청 권한(Wagner-von Papp 2019, 이승훈 2008, 이봉의 20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p>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u>제89조제1항</u>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u>제89조부터 제92조</u>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89조제3항</u>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p>	<p>제15조(동의의결의 취소 등)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91조제1항 각 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의결 취소 또는 변경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신고인 등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의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p> <p>③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이행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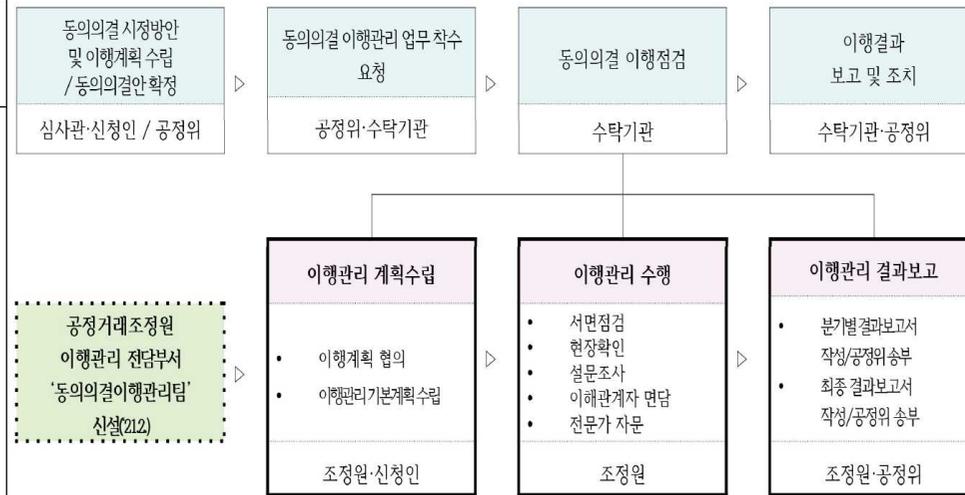
- 전문성: 금융업별 특성, 위탁기관
- 객관성, 투명성: 점검 및 평가 기준, 평가지표, 보고체계, 공개
- 독립성: 신청인과 관계 등 (유영국 2021, 손봉현 20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90조(동의를결의 절차) ①-④생략

- ⑤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를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를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를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⑩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동의를결 이행관리 절차>



이행강제

- 이행 부실 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 제3자의 소 제기(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p style="text-align: center;">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p>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u>제16조제2항</u> 및 <u>제3항</u>을 준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매출액 10% 또는 법 위반 입증된 경우 부과금(독일), 일일 이행강제금 - 미국 CFPB

III. 맺음말

-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소비자와 분쟁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동의명령(동의의결)제도가 국내 다수 법률에 도입되고 있어, 금융 부문에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및 절차상 이슈도 논의해볼 필요
- 동의명령제도는 금융회사의 준법 행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민사 또는 기타 행정 제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 당국이 선호하는 가장 유연하고 효과적인 감독수단 중의 하나임
- 금융 부문에서 동의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로는 제도의 적용 범위, 절차 개시, 심의 기준, 조기 종결 및 취소 사유, 이행관리 등을 들 수 있음
- 축적된 제도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개선된 동의명령제도가 향후 금융소비자법이나 금융위설치법 등 금융관련법에도 도입되어 위법 여부의 다툼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감독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신속하면서도 시의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함.

참고문헌

- 강지원(2014),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2.7
- 박준영(2021), 디지털 경제하 공정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도입 방안, 경제규제와 법 14권1호, 2021.5.
- _____.이광배(2021),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2021.9.
- 박혜림(2015), 동의의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서울법학 22권 3호, 2015.2.28.
- 송혜진, 박희주(2020),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20.12.
- 이봉의(2011), EU, 독일의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No. 2011-07, 2011.12.
- _____, 김건식, 복홍석(2015), 동의의결제도의 규범적 정당성 및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5.12.
- 이승훈(2008), 행정소송에 의한 동의명령의 취소, 법조 2008.3 (Vol. 618), 2008
- 정영철(2017),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로서의 확약서양해각서 활성화 방안, 금융감독연구 4권 1호, 2017.4.
- 정완9(2021), 경쟁법 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홍익법학, 22권 3호, 2021.
- 최은진(2021),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5.25.

<자료집>

- 동의의결절차 및 이행관리의 향후 발전방안, 2021.12.10 (최난설헌, 박준영, 유영국, 손봉현)
- 동의의결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한국경쟁법학회, 2020.9.18 (황태희, 남수진, 권국현, 이민호)
- 동의의결제도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세미나, 2014.11.4. (이건목, 주진열)